

2024년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인증 신청기관 모집 공고

- 6.11.(화)~6.28.(금) 간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3차년도 신청 공고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 발달재활 4종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
- 전자바우처 등록 기관 및 동일한 서비스 제공하는 비(非)바우처기관 가능, 기관들의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과정 사전 컨설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6월 11일(화)부터 6월 28일(금)까지 2024년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의 인증 신청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는 고품질 서비스 제공기관에 인증을 주는 제도로, 인증받은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 제고 노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적 자원 ▲서비스 운영 등 5가지 영역에 대해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와 기관방문을 통해 품질수준을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인증신청 대상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전자바우처 등록 기관뿐 아니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非)바우처 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기관들의 인증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 심사 대상 기관에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등 인증과정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은 인증결과가 확정되어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품질인증 현판이 수여되고,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인증신청 기간은 6월 11일(화)부터 6월 28일(금)까지이며, 신청은 이메일 접수로 이루어지고 인증 수수료는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무료이다.

* 접수처 :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 이메일(qc@kcpass.or.kr)

< 인증 접수 및 신청방법 >

◇ 신청 기간

- 6월 11일(화) ~ 6월 28일(금) 18:00

◇ 인증신청 공고

-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www.kcpass.or.kr) ▶ 공지사항

◇ 인증신청 방법

- 접수방식 : 이메일 접수(qc@kcpass.or.kr)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인증 수수료

- 무료

◇ 문의처

-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02-2271-9050, 9886, 9097)

한편, 현재까지 품질인증을 부여받은 시범인증기관은 총 39개 기관(2022년 15개, 2023년 24개)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인증기관의 인증기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서면 및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과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증신청 요건과 인증기관 현황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www.kcpass.or.kr)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1.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개요
2.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인증기준
3.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참여 대상사업 개요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혜성 (044-202-2670)
		담당자	사무관	김태경 (044-202-3203)
담당 부서	중앙사회서비스원 품질평가부	책임자	부 장	원 일 (02-2271-9049)
		담당자	과 장	김홍철 (02-2271-9037)



□ **추진배경**

- 이용자 선택권 강화 및 구매력 있는 중산층으로 수요 확대 등 사회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품질관리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점검·확인 중심의 의무적 평가뿐만 아니라 제공기관의 자발적 품질제고 유도를 위한 품질인증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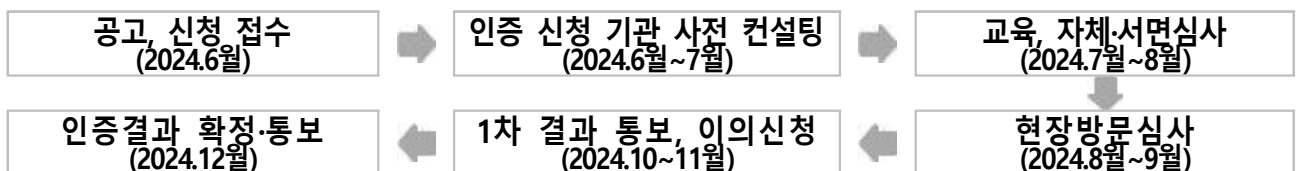
* 인증을 통한 국가의 서비스 품질 담보 → 인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수요 증가 → 이용자 확보를 위한 제공기관의 자발적 질 제고

□ **인증 개요**

- (주체/유효기간) 보건복지부장관 / 인증심의 결과 통보 후 3년
- (대상)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발달재활서비스 4종 바우처 제공기관 및 동일 서비스 제공하는 비바우처 기관
- (기준) 서비스 과정 전반에 대한 품질과 이에 영향을 주는 인적·물적 제공 여건 등 5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
- (혜택)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서·인증현판 수여, 기관홍보물·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 활용 및 홍보 지원 등
- (사후관리) 인증 자격의 유지·관리, 인증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차별('22년, '23년) 사후컨설팅 및 현장점검 실시

* 인증수준 미이행 등에 따른 인증취소, 자격 정지 등 세부 기준 마련·이행

○ **추진절차**



○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총괄 · 법령 개정, 관계 부처 협의 및 정책 수립
중앙사회서비스원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운영 지원·관리 등 사무 - 인증 기준 관리, 성과분석 등 · 인증심사위원 관리 및 인증위원회 구성·운영

붙임 2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인증기준

- (인증지표 개요) ①서비스 운영 ②인적 자원 영역, ③안전·예방 영역, ④재정건전성 영역, ⑤경영관리 영역 총 5개 영역으로 구성

영역	품질인증기준(12)		품질인증지표(32)
Ⅰ. 서비스 운영	1.1	서비스 운영 규정의 확립	1.1.1 서비스 운영 규정의 체계
			1.1.2 서비스 운영 규정의 공유
	1.2	서비스 기반구조의 운영	1.2.1 서비스 제공환경의 적합성
			1.2.2 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 관리
			1.2.3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의 운영
	1.3	서비스 제공과정의 운영	1.3.1 이용자 중심 서비스 계획 수립
			1.3.2 계획기반 서비스 실행 관리
			1.3.3 목표기반 서비스 모니터링
			1.3.4 서비스 종결 관리
Ⅱ. 인적 자원	2.1	인사관리체계의 운영	2.1.1 인사관리규정의 적절성
			2.1.2 인력 모집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
			2.1.3 근무평정체계의 운영
	2.2	복무관리체계의 운영	2.2.1 복무관리규정의 적절성
			2.2.2 종사자 권리보호 및 고충처리
Ⅲ. 안전· 예방	3.1	시설안전관리체계의 운영	3.1.1 시설안전관리규정 운영의 적절성
			3.1.2 시설안전관리체계의 운영
			3.1.3 종사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운영
	3.2	위험예방체계의 운영	3.2.1 위험예방체계의 적절성
			3.2.2 위험예방체계의 이해관계자 공유
	3.3	정보관리체계의 운영	3.3.1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운영
			3.3.2 문서 및 기록 관리지침의 운영
Ⅳ. 재정 건전성	4.1	재무(회계) 관리 체계의 확립	4.1.1 회계규칙(규정) 운영의 적절성
			4.1.2 회계처리의 내부통제 체계 운영
	4.2	재무(회계) 책무성 강화	4.2.1 회계결산 체계의 운영
			4.2.2 재정책무성 확보
Ⅴ. 경영 관리	5.1	기관운영규정의 운영	5.1.1 사회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운영규정 확립
			5.1.2 사회서비스 기관의 조직 및 인력 관리
			5.1.3 사회서비스 기관의 재정 및 회계 관리
			5.1.4 사회서비스 기관의 시설안전 및 정보관리
			5.1.5 사회서비스 기관의 이해관계자 권리보호
	5.2	PDCA기반 사업계획의 운영	5.2.1 기관장의 전문성과 리더십
			5.2.2 사업계획의 실행 및 평가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목적)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지자체 예산범위 내 150% 초과 지원 가능)
- (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산모 정보제공(감염 예방 및 관리 등),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 (목적)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의 과잉행동장애(ADHD), 주의력 결핍 등의 문제를 가진 아동·청소년(18세 이하)
- (내용) 프로그램(언어·놀이·미술·음악·심리상담 등)을 선택하여 주 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부모교육) 제공

3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 (목적) 아동·청소년 시기의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미래 비전 형성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7세~15세 아동·청소년
- (내용) 체계적인 비전·리더십 형성 프로그램(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 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등) 및 체험학습 등 지원

4 발달재활서비스

- (목적)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의사소통·감각·운동 등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내용) 서비스 제공인력이 기관 또는 가정에 방문하여 1:1 서비스(언어·청능, 미술심리·음악·놀이심리·행동발달, 감각발달·운동발달 재활영역 등) 제공